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6/ 11 통권 1731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최근 3년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이해(5): 공시 및 투명성
-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해외 코인도 대상, 해외금융계좌 6월에 꼭 신고하세요!
- 세금포인트로 여가비 천원 할인 받는 꿀팁
- '24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 최근 3년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p.12)

###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 <증여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증여관계	증여공제금액 계산방법, 적용조건 등
증여취소	증여 3개월 내 취소·반환시 모두 증여세 취소, 6개월 내 반환시 갈 때 증여과세 후 반환 시 비과세, 6개월 초과 반환되면 가고 오는 양방 모두 과세
배우자	소급 10년 단위 합 6억원 공제
직계존속	10년 단위 5천만원(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공제, 부모·조부모 증여액도 10년 합산하여 5천만원 증여공제 적용함(직계존속 모두 합해 5천만원 공제)
직계비속	자녀와 손자녀(배우자 포함) 증여시 10년 합산하여 과세(증여공제는 합 5천만원 적용)
기타공제	5년 내 합하여 부부합 1천만원만 공제 ①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증여시 모든 증여 합하여 1천만원 공제함 ② 며느리나 사위에 증여도 부부 합해서 1천만원만 공제함
혼인공제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 수증시 1억원 별도공제(부부 양가 합하면 2억이 됨)
출산공제	거주자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 부모로부터 수증받은 금액에서 1억원 별도공제(단 혼인공제와+출산공제를 합하여, 10년 내 1억원만 공제 적용함)
가업승계	① 가업승계 출자지분 증여시 (주식가액 - 10억원)×세율 10% 적용(과표 120억 초과시 20%) 가업자산승계액은 300억(10~20년 경영), 400억(20~30년 경영), 600억(30년 이상 경영) 한도로 함. ② 요건: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가업승계함.
창업자금	부동산 제외 창업자금 평가액(50억원 한도 - 5억 공제)×세율 10%의 증여세 부과(10년 이상 신규 고용시 100억원 한도증액)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31호 / 주간 24호

2025. 6. 11. (수)

· 발 행 인: 이윤선  
· 제 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증여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적용방법	표지
CEO의 경영산책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이해(5): 공시 및 투명성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IoT(사물인터넷) 자산성 여부 - 노소(예약부도)위약금 관련하여 - 퇴직소득 세액 계산시 근속연수 관련 질의 - 감가상각 내용년수문의 및 토지임대료산정방법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이재명 대통령 주요 부동산 정책 - 주택분 취득세 요약표	9 10
직장인 Survival	역량개발 필요성	11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8항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그 사업을 대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법규부가-86, 2024.06.25) - 종전연결도법인이 쟁점 의제연결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서면법규법인-530, 2024.11.18)	12 13
세정 뉴스와 해설	해외금융계좌, 잔액 5억 넘었다면 신고해야... 6월 30일까지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12
세무정보	- 해외 코인도 대상, 해외금융계좌 6월에 꼭 신고하세요! - 세금포인트로 여가비 천원 할인 받는 꿀팁	15 23
회계정보	- '24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 최근 3년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	29 38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28

#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이해(5): 공시 및 투명성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 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한 건전한 거버넌스의 구축 운영의 관점에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2023) 원칙 중 공시 및 투명성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소유, 지배 등을 포함한 기업에 대한 모든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상장법인 및 대규모 비상장 법인에 대해서 많은 양의  
정보가 자발적이든 의무적이든 작성되고, 다양한 정보이용자에게 전달된다. 일반공시(public  
disclosure)는 대체로 최소한 연간 기준으로 요구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분기별, 반기별  
정기공시를 요구하거나,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기도 한다. 기업은 시장  
요청에 따라 최소한의 공시 요건 이상의 자발적 공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강력한 공시제도는 시장중심의 기업 감독 체제의 핵심사항이며, 동시에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주주의 능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대규모의 활동적인  
주식시장이 있는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공시는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한다. 강력한 공시제도는 자본유치와 자본시장의 신뢰  
유지에 기여한다. 주주와 잠재적 투자자는 정규적으로 신뢰가능하며 비교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경영진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주식의 평가·소유 및 의결권과  
관련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불충분하고 불명확한 정보는 시장의 기능을 해치며,  
자본비용을 증대시키고 결국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한다.

공시요건으로 기업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관리 및 금전적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보 공시가 투자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시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최소한 어떠한 정보가 공시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중요성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중요한 정보란 정보의 삭제, 오보가 사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중요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 또는 투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하게 고려할 정보로 정의할 수도 있다. 실질적인 투명성을 촉진하는 강력한 공시제도는 기업에 대한 시장기반 감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아울러 정보에 근거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주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약한 공시제도와 불투명한 공시관행은 비도덕적 행태를 유발하고 시장의 완결성을 약화시켜 기업과 주주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주주(현재적 투자자)와 잠재적 투자자 들은 경영진의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가치평가 소유권 의결권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한 상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시는 일반대중이 기업의 구조 및 활동, 환경적·윤리적 기준에 입각한 정책과 성과,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공시는 최소한 다음 각항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A. 기업의 재무성과와 영업성과

B. 기업의 목적과 비재무적 정보

기업은 상업목적 이외에도 기업윤리,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책과 성과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이슈, 인권 문제, 기타 공공정책 참여현황에 대해서도 공시하는 것이 좋다.

C. 실질주주를 포함한 주요주주 및 의결권

투자기업의 소유구조, 본인의 권리 및 다른 주주의 권리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투자자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

D. 이사회와 주요 집행간부의 보수

E. 자격요건, 선임절차, 타회사 이사 경력, 독립성 보유 여부에 대한 이사회 평가 등 이사에 대한 정보

## F. 관계자거래

### G. 예측가능한 리스크 요소(risk factor)

재무정보 이용자와 시장참가자들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주요 리스크 (material risks)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에는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산업 및 지역의 리스크, 원자재 의존도 리스크, 이자율 리스크 및 외환 리스크 등과 같은 금융시장 리스크, 파생상품과 부외자산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불법영업 리스크(business conduct risks), 환경 리스크 등이 포함된다.

### H. 종업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 관련사항

기업은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종업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 기업지배구조

기업은 자신의 지배구조관행(corporate governance practice)을 공시해야 한다. 지배구조관행에 대한 공시는 정기공시의 일부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기업은 규제당국 또는 상장당국(listing authority)이 제정하거나 승인한 기업지배 구조원칙(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은 규칙 준수 여부 및 미준수 시 미준수 사유를 설명하는 "comply or explain" 방식에 기초한 공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IoT(사물인터넷) 자산성 여부

**Q** 공장 내 IoT를 설치하였는데 회사 자산성으로 보는게 맞나요?  
자산으로 잡아야 하면 소프트웨어쪽으로 잡으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경제적 효익의 존재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됨. 단, 저희가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귀사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참작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노쇼(예약부도)위약금 관련하여

**Q** 노쇼위약금의 경우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1) 고객이 세금 포함한 객실료를 사전에 입금 후 노쇼인 경우 노쇼위약금을 세금은 제외한 금액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2) 여행사의 경우 VCN (가상카드)로 결제시에는 세금 포함된 금액으로만 결제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세금포함된 금액으로 노쇼위약금을 처리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지요?

**A**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 성격의 금액은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성 금액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약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 세액 계산시 근속연수 관련 질의

**Q** 퇴직소득 세액 계산시 근속연수 관련 질의 드립니다.  
81.03.01~84.02.28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84.03.01에 정규직 전환이 되어 사학연금 가입이 된 직원이 23.02.28에 퇴직했을 때  
정규직 재직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사학연금에서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나,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과거 3년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긴 경우 근속연수를 81.03.01~23.02.28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81.03.01~84.02.28로 봐야하나요? 노무법인에 퇴직금액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해보니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하여 최근 3개월치의 정규직 급여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허나 근속연수는 3년(계약직 근무기간), 42년(계약직+정규직 근무기간), 39년(정규직 근무기간)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A** 정규직 전환 이전의 계약직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81.3~23.228일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이 없는바 보다 명확한 사항은 과세관청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감가상각 내용년수문의 및 토지임대료산정방법

**Q** (질문1) 주유소 지하탱크용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알고 싶습니다. 취득가액 2억~3억 가량이고 건축물로 해야하는 건지 아님 저장탱크로 내용년수 4년으로 하는건지?

(질문2) 토지의 적정 임대료 산정 방법 알려주세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유소임대에 줄때 임대료 산정방법?

**A** 1. 일반적으로 토지에 부착하여 설치되는 건물이외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로 반영하시면 되므로 귀사도 건축물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시가로 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토지의 시가의 50%에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에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거래대금에 대한 결제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한이 경과된 대금결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결제기한내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거래 당사간에 합의하여 지체상금을 주고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결제기한을 연장해주고 받게 되는 지체상금의 세무처리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아니한 지체상금은 이자소득 아님

통상 대금결제의 지연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상호 합의된 일정금액을 주고받거나, 지연기간에 약정된 이율이나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주고받게 된다.

지체상금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그 세무처리가 달라지는데,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금전소비대차(자금대여)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받는업체)이나 지급이자(지급업체)로 처리하며,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고 단순 지연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금액이라면 이자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고 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한다.

즉, 대금의 결제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당 대가를 대여한 것으로 전환하고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이자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이자지급 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로의 전환이 아닌 지급지연에 따른 단순한 지체상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9의5호의 규정에 의해 지출증빙수취특례가 적용된다.

♣ 서이46013-11968, 2003.11.14.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  
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지체상금의 지급의무 확정시점의 손금으로 반영

법인세법상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은 제외)은 손금불산입 대상인 벌금·과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체상금(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은 제외)을 지급하였다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지체상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면 된다.

##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재화·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 서면3팀-699, 2008.04.0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이재명 대통령 주요 부동산 정책

공약	주요 내용
지방성장거점 및 균형발전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건립, 1·2·3기 신도시 건설
중산층·서민주택공급 정책	인허가 신속제도, 공사비 투명화 통한 고분양가 해소, 용적률·건폐율 완화 추진
1인 가구·청년 주거정책	역세권·GTX 환승역·공공시설 복합개발로 공급 확대, 쉐어하우스,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화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공공기관·기업 유희부지에 주택·일자리 공급, 과잉 업무용지 주택용지로 전환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신혼·노년층 맞춤형 공공임대,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모델 확대



###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

서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람료 2천원 할인</li> <li>• 기념품점 구매금액별 2-10천원 할인</li> </ul>
	목동아이스링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장권 1천원 할인</li> </ul>
제주	상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목원 입장료 1~2천원 할인</li> </ul>
	훈데르트힐즈투숙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데르트힐즈 투숙 시 객실당 입장권 1매 제공</li> </ul>
	라운더마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마공연, 승마체험, 카트 이용료 할인</li> </ul>
	마라도·가파도 정기여객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라도·가파도 여객선 왕복 승선료 2천원 할인</li> </ul>
	서귀포 JS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요금 5천원 할인</li> </ul>



## 주택분 취득세 요약표

주택취득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li> <li>• 취득: 유상취득인 매매와 무상취득인 상속·증여, 원시취득인 신축·증축 등을 모두 포함</li> </ul>																																																								
납부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납부대상자가 됨</li> </ul>																																																								
과세대상 금액 (과세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 당시의 가액</li> <li>• (유상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li> <li>• (무상취득: 증여)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 예외: 시가표준액</li> <li>• (원시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 예외: 시가표준액</li> </ul>																																																								
세율	<p style="text-align: center;">&lt;표준세율&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취득세</th> <th>지방교육세</th> <th>농어촌특별세</th> </tr> </thead> <tbody> <tr> <td>6억원 이하</td> <td>1.0%</td> <td>0.1%</td>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전용면적 85㎡ 초과 시 0.2% 과세</td> </tr> <tr> <td rowspan="5">6억원 초과 9억원 이하</td> <td>6.5억원</td> <td>1.33%</td> </tr> <tr> <td>7억원</td> <td>1.67%</td> </tr> <tr> <td>7.5억원</td> <td>2.0%</td> </tr> <tr> <td>8억원</td> <td>2.33%</td> </tr> <tr> <td>8.5억원</td> <td>2.67%</td> </tr> <tr> <td>9억원</td> <td>3.0%</td> <td></td> </tr> <tr> <td>9억원 초과</td> <td>3.0%</td> <td>0.3%</td> <td></td> </tr> <tr> <td>원시취득(신축), 상속*</td> <td>2.8%</td> <td>0.16%</td> <td>0.2%</td> </tr> <tr> <td>무상취득(증여)</td> <td>3.5%</td> <td>0.3%</td> <td>0.2%</td> </tr> </tbody> </table> <p>*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세율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lt;다주택자·법인 등 중과세율&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취득세</th> <th colspan="4">유상취득</th> <th rowspan="2">무상취득 (3억원 이상)</th> </tr> <tr> <th>1주택</th> <th>2주택</th> <th>3주택</th> <th>4주택-법인</th> </tr> </thead> <tbody> <tr> <td>조정지역</td> <td>1~3%</td> <td>8%</td> <td>12%</td> <td>12%</td> <td>12%</td> </tr> <tr> <td>非조정지역</td> <td>1~3%</td> <td>1~3%</td> <td>8%</td> <td>12%</td> <td>3.5%</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교육세: 중과분(8% 및 12%) 모두 0.4%</li> <li>• 농어촌특별세: 8% 중과분 0.6%, 12% 중과분 1%</li> </ul>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원 이하	1.0%	0.1%	전용면적 85㎡ 초과 시 0.2% 과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6.5억원	1.33%	7억원	1.67%	7.5억원	2.0%	8억원	2.33%	8.5억원	2.67%	9억원	3.0%		9억원 초과	3.0%	0.3%		원시취득(신축), 상속*	2.8%	0.16%	0.2%	무상취득(증여)	3.5%	0.3%	0.2%	취득세	유상취득				무상취득 (3억원 이상)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법인	조정지역	1~3%	8%	12%	12%	12%	非조정지역	1~3%	1~3%	8%	12%	3.5%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원 이하	1.0%	0.1%	전용면적 85㎡ 초과 시 0.2% 과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6.5억원	1.33%																																																							
	7억원	1.67%																																																							
	7.5억원	2.0%																																																							
	8억원	2.33%																																																							
	8.5억원	2.67%																																																							
9억원	3.0%																																																								
9억원 초과	3.0%	0.3%																																																							
원시취득(신축), 상속*	2.8%	0.16%	0.2%																																																						
무상취득(증여)	3.5%	0.3%	0.2%																																																						
취득세	유상취득				무상취득 (3억원 이상)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법인																																																					
조정지역	1~3%	8%	12%	12%	12%																																																				
非조정지역	1~3%	1~3%	8%	12%	3.5%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해 '25.12.31.까지 취득세 감면</li> <li>* 최대 200만원(소형주택 3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li> </ul>																																																								
신고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3개월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첨부서류)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분양계약서(분양받은 경우), 잔금납부 영수증 등</li> </ul>																																																								



## 역량개발 필요성

역량개발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과 조직에 매우 중요합니다.

- 1. 변화에 대한 적응** : 오늘날 급변하는 업무 환경에서는 기술 발전, 업계 동향, 조직 변화 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역량개발을 통해 개인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자신의 역할에서 효과적이고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 향상된 성능** : 역량개발은 업무 성과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함에 따라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팀과 조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 3. 경력 성장 및 만족도** : 역량개발은 개인에게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기술 향상은 개인적, 직업적 성장에 기여하여 직업 만족도와 성취감을 높여줍니다.
- 4. 생산성 향상** : 유능한 개인이 더 생산적입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업을 완료하여 전반적인 조직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역량이 향상되면 프로세스가 간소화되고 리소스 활용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5. 경쟁 우위** : 역량개발에 투자하는 조직은 경쟁 우위를 확보합니다. 숙련되고 지식이 풍부한 인력은 혁신하고, 시장 변화에 적응하고,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직을 업계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 6. 직원 참여 및 유지** :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직원의 직업적 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참여를 높이며 유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최신 판례 예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8항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그 사업을 대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법규부가-86, 2024.06.25

## 질 의

-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지자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호의2에 따른 지방공사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 및 별표10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면세 사업을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8항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그 사업을 대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질 의

-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이를 수령하는 주주의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Marketing Tax consulting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아님

기준법규소득-154, 2024.10.30

## 질 의

- 신청인은 '@@@@'이라는 상호의 공동사업에 출자한 공동사업자로 '21.0.00부터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신청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에도 출자한 공동사업자로서 '22.0.00.부터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 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소득세 경정청구함

질의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2024.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2024.10.18.]

[질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제1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됨 (제2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종전연결모법인이 쟁점 의제연결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서면법규법인-530, 2024. 11. 18

질의

- 질의법인은 '00.6.26. 설립되어 종합 정보보호서비스 및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22사업연도까지 질의법인을 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왔으나(사업연도 연결사업연도: 1.1. 12.31.)
  - '23.6.19.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새로운 연결모법인인 갑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지배구조가 변경됨

- 질의법인과 갑법인은 '23사업연도에「법인세법」 제76조의8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6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게 되었음

질의

- 2023.1.1. 2023.6.19. 투자금액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 제76조의8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이하 '종전연결모법인')이 2023년 중 주식의 포괄적 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으로 다른 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이 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76조의8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6항제1호에 따라 "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종전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교환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이하 '쟁점 의제연결사업연도')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연결모법인이 쟁점 의제연결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해외금융계좌, 잔액 5억 넘었다면 신고해야... 올해 6월 30일까지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2024년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과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해당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29일 국세청은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라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이외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제상담센터,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와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10억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3년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안내를 실시했다”며 “납세자들은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세청, 수입 과세자료 제출 대폭 간소화... “효율적 신고관리 체계 구축”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자료 제출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줄이고, 과세자료 관리를 체계화해 납세자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신고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기존처럼 수입 건별로 과세자료를 매번 제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매년 1회, 8개 주요 분야별로 과세자료를 일괄 제출하면 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제출 대상 분야는 ▲관리사용료 ▲수수료 ▲특수관계자 거래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간접지급금 ▲사후귀속이익 ▲생산지원 등이다. 이 8개 분야 외 거래는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는 최초 수입신고 시 1회만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동일 조건의 건은 최초 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관세청은 납세협력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세액심사 제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강화를 통해 신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나 ACVA(특수관계자 사전심사 대상)와 같은 납세협력 프로그램 가입 기업, 그리고 전년도 납세실적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자료 누락으로 인한 추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라며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해외 코인도 대상, 해외금융계좌 6월에 꼭 신고하세요!

- 국세청, 2025. 5

- 모든 해외금융자산이 신고대상,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

□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4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난해 신고하셨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2),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10억 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 4천 명

- 특히, '23년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 납세자께서는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 1 신고 대상

- (해외금융계좌 내 금융자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로서 외국의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설립된 자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나, 외국 금융회사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는 2023년 6월 신고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다만,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의 경우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수탁형·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외 가상자산 지갑의 종류별 신고 대상 여부 판단에 유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 2 신고 의무자

- ('24년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4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해외 차명 금융계좌와 같이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서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해외금융계좌 관련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 부담, 이자·배당 등 수익 수취, 해당 계좌 처분권 보유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

□ (신고의무 면제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아래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구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2015.1.1.~2024.12.31.)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2024.1.1.~2024.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국제기관 근무자	외국정부, 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신고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요약】**

<p><b>신고의무자</b></p> <p>▷ '24.12.31.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p>	<p><b>신고기준금액</b></p> <p>▷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모든 해외계좌 (가상자산 포함) 잔액 합계가 5억 초과</p>
<p><b>신고의무 면제자</b></p> <p>▷ 외국인거주자 : '15~'24년 국내거주 5년 이하 ▷ 재외국민 : '24년 국내거소기간 183일 이하</p>	<p><b>신고기한</b></p> <p>▷ '25.6.1.~6.30.</p>

### 3 신고방법

- (전자신고) 신고의무자는 2025. 6.1.부터 6.30.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경로)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 (신고도움)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고 내역을 활용해 신고를 돕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신고의무자가 전년도 홈택스 신고내용을 활용하여 기준일 잔액을 제외한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을 금년도 전자 신고서에 바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서비스
- 또한 올해도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 4천 명
-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2),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025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거주자 및 내국법인들은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해외금융계좌 전체 월말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II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 사항

### 1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산출방법

-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각각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 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합니다.

-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가 개설된 해당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가상자산의 매월 말 일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가상자산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월말 잔액 산출 방법】**

자 산	산출 방법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상장채권 가상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 격)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 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 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위 이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2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방법**

- 매월 말일의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 이 신고기준일이며, 그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 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

- 아래 사례에서 신고의무자가 2024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 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은 2월(6억 원), 4월(9억 원), 8월(6억 원)입니다.
- 우선,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은 4월이므로 4월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됩니다.
- 신고의무자는 4월 말 현재 보유 중인 A계좌 잔액(예금 2억 원)·B계좌 잔액(가상자산 3억 원)·D계좌 잔액(채권 4억 원)과 그 합계액(9억 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준일(4월 말일) 이후 5월에 개설된 C계좌(보험)는 2024년 중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D계좌(채권)는 연도 중 해지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사례】**

(단위 : 억 원)

기준일 계좌	1/31	2/28	3/31	4/30	5/31	6/30	7/31	8/31	9/30	10/31	11/30	12/31
A계좌 잔액 (예금)	1	1	1	2	1	-	-	2	4	2	1	1
B계좌 잔액 (가상자산)	2	2	1	3	1	-	-	-	-	1	2	1
C계좌 잔액 (보험)	계좌 미개설				1	2	2	4	-	1	-	1
D계좌 잔액 (채권)	1	3	1	4	1	1	계좌 해지					
합계	4	6	3	9	4	3	2	6	4	4	3	3

**III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1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 (과태료)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1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5. 2. 28.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2 미신고자 검증 및 제보 포상금

- (미신고자 검증)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다른 기관 통보자료, 자체 수집자료 등을 심층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 및 역외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 특히, 해외 가상자산계좌의 경우 2027년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정보교환 제도(CARF\*)가 시행되면 실효적인 검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25년 3월 현재 50개국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용자·서비스 제공업자·거래 정보 등을 국가 간 교환하는 제도
-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로 제보 가능

## IV 해외금융계좌 신고 FAQ

### 1 2024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4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25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2024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2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가요?

-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 3 잔액이 8억 원인 해외금융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4억원)이 5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공동명 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



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4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 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5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이나 주식예탁증서에 투자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도 신고대상입니다.

#### 6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해 만든 지갑도 신고 대상인가요?

-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국외에 소재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외금융회사등에 해당하므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만든 지갑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24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7 거주자가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므로,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금포인트로 여가비 천원 할인 받는 꿀팁

- 국세청, 2025. 5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5월 28일(수) 서대문자연사박물관(관장 노정래)·(주)와이키키 목동아이스링크(대표 이재원) 등 총 7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수도권 서울과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 혜택을 준비하였습니다.

**/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 /**

서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 관람료 2천원 할인 · 기념품점 구매금액별 2-10천원 할인
	목동아이스링크	· 입장권 1천원 할인
제주	상효원	· 수목원 입장료 1~2천원 할인
	훈데르트힐스파크	· 훈데르트힐즈 투숙 시 객실당 입장권 1매 제공
	라운 더마파크	· 기마공연, 승마체험, 카트 이용료 할인
	마라도·가파도 정기여객선	· 마라도·가파도 여객선 왕복 승선료 2천원 할인
	서귀포 JS호텔	· 숙박요금 5천원 할인

※ 다른 할인과 중복하여 할인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서울 도심에서 휴일을 보낸다면 세금포인트로 알뜰하게 할인을 받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관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목동아이스링크에서 건강한 실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제주도 여행을 떠난다면 아름다운 우도와 서귀포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섬인 가파도와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까지 이어지는 여행길을 세금포인트 혜택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사용처 당 1일 최대 5매)하여 해당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 ※ (모바일 쿠폰 발행) My홈택스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혜택 > 모바일 쿠폰 바로가기 > 문화·여가 할인 쿠폰 또는 제주도 관광 할인 쿠폰
-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많은 국민이 몸과 마음이 충전되는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누리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통하여 세금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참고 1**      **세금포인트 사용처 상세 할인내용**

○ 서울

구분	할인내용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람료 <b>2,000원</b> 할인 : 어른(7,000원 → <b>5,000원</b>), 청소년(4,000원 → <b>2,000원</b>), 어린이(3,000원 → <b>1,000원</b>)</li> <li>▶ 기념품점 할인</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매구간</th> <th>할인금액</th> <th>구매구간</th> <th>할인금액</th> </tr> </thead> <tbody> <tr> <td>2만원 이상 4만원 미만</td> <td>2,000원</td> <td>4만원 이상 6만원 미만</td> <td>4,000원</td> </tr> <tr> <td>6만원 이상 8만원 미만</td> <td>6,000원</td> <td>8만원 이상 10만원 미만</td> <td>8,000원</td> </tr> <tr> <td>10만원 이상</td> <td>10,000원</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매구간	할인금액	구매구간	할인금액	2만원 이상 4만원 미만	2,000원	4만원 이상 6만원 미만	4,000원	6만원 이상 8만원 미만	6,000원	8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8,000원	10만원 이상	10,000원		
구매구간	할인금액	구매구간	할인금액														
2만원 이상 4만원 미만	2,000원	4만원 이상 6만원 미만	4,000원														
6만원 이상 8만원 미만	6,000원	8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8,000원														
10만원 이상	10,000원																
목동 아이스링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장권 <b>1,000원</b>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일) 성인(4,000원 → <b>3,000원</b>), 청소년(3,500원 → <b>2,500원</b>), 어린이(3,000원 → <b>2,000원</b>)</li> <li>- (토,공휴일) 성인(5,200원 → <b>4,200원</b>), 청소년(4,500원 → <b>3,500원</b>), 어린이(3,900원 → <b>2,900원</b>)</li> </ul> </li> </ul>																

○ 제주

구분	할인내용
상효원	▶ 입장료 할인 : 일반(9,000원 → <b>7,000원</b> ), 청소년·경로(7,000원 → <b>6,000원</b> ), 어린이(6,000원 → <b>5,000원</b> )
훈데르트 바서파크	▶ 훈데르트힐즈 투숙 시 객실당 입장권 1매( <b>9,900원</b> ) 제공

라운더마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마공연, 승마체험(귀족승마 제외), 카트 이용료 할인</li> <li>- 기마공연 : <b>9,000원</b> 할인(성인 : 25,000원 → <b>16,000원</b>, 청소년 : 20,000원 → <b>11,000원</b>, 어린이 : 20,000원 → <b>11,000원</b>)</li> <li>- 승마체험 : A코스 15,000원 → <b>10,000원</b> / B코스 35,000원 → <b>20,000원</b></li> <li>- 카트 : 1인용 25,000원 → <b>10,000원</b> / 2인용 35,000원 → <b>20,000원</b></li> </ul>
마라도 가파도 정기여객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객선 왕복 승선료 <b>2,000원</b> 할인</li> <li>- 마라도 : 성인·청소년(20,000원 → <b>18,000원</b>)</li> <li>- 가파도 : 성인(14,500원 → <b>12,500원</b>), 청소년(14,300원 → <b>12,300원</b>)</li> </ul>
서귀포 JS 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요금 <b>5,000원</b> 할인 : 스탠다드 트윈·더블(60,000원 → <b>55,000원</b>), 디럭스 트윈(70,000원 → <b>65,000원</b>), 디럭스패밀리(80,000원 → <b>75,000원</b>)</li> </ul>

※ 1천원 할인 당 1포인트가 차감되며, 모바일 쿠폰 발행 이후 차감된 포인트는 환원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2 확대된 사용처 소개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 (특 징) 우주, 지구의 역사, 생물진화와 인류문화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기여하는 종합박물관
-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32길 51

### 목동아이스링크

- (특 징) 한국 빙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가장 상징적인 빙상장으로 국제규격의 빙면을 2면 보유하고 있으며 실내에서 이용 가능하여 4계절 내내 스케이팅 체험이 가능
- (소재지)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

### 상효원

- (특 징) 제주 자생식물과 계절별 초화가 전시된 4만평 규모에 제주 1호 사립수목원으로 다양한 식물관련 체험, 걷기 좋은 넓은 관람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 가능한 운동장 및 잔디광장 등이 있음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산록남로 2847-37

### 훈데르트바서파크

- (특 징) 오스트리아의 3대 화가이자 제2의 가우디라 불리는 훈데르트바서의 오리지널 건축 및 미술과 친환경 예술의 섬 우도의 완벽한 조화로 이루어져 작품 속으로 걷는 착각을 일으키는 장소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해안길 32-12

### 라운 더마파크

- (특 징)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봐야 할 기마공연 ‘마지막전투 황산벌’ 기마뮤지컬 공연 이외 신나는 카트체험, 힐링이 되는 승마체험이 가능한 복합 레저시설 관광지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림7길 155

### 마라도·가파도 정기여객선

- (특 징) 가장 낮은 섬 가파도,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를 제주도 본섬과 연결하는 유일한 선사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 서귀포 JS호텔

- (특 징) 제주도 어느 곳에서든지 접근하기 쉬운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200 여실의 다양한 객실과 뷔페 레스토랑, 연회장, 남녀 사우나, 수영장, 피트니스 클럽 보유하고 있음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51

## 참고 5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및 사용처

### □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개요	대상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세목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 촌특별세
	부여 기준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	
	누적 관리	최근 5년 동안 부여(6년 이전 부여 포인트 소멸) ※ 개인납세자 포인트는 '25년에 부여하는 포인트부터 관리기간(5년) 적용	
	부여 한도	1년에 개인·법인 인당 50 포인트 한도로 부여 ※ '25년에 부여하는 포인트부터 한도 적용	
	부여 시기	매년 3월에 부여(전년도 납부세액까지 부여) ※ 단,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전전년도 납부세액까지 부여	

□ 세금포인트 사용처

구 분		내 용
상 세 사 용 처	쇼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li> <li>•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행복한 백화점</li> </ul>
	세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li> <li>• 소액채납자 재산 매각유예</li> <li>•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li> <li>•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li> </ul>
	수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li> </ul>
	문화· 여가 <b>모바일 쿠폰</b>	관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자연휴양림(46개) 입장료 1천원 감면</li> <li>• 한국자생식물원 입장료 1천원 할인</li> <li>• 평화누리캠핑장 이용료 5천원 할인</li> <li>• 베어트리파크 입장료 1천원 할인</li> </ul>

구 분		내 용	
상 세 사 용 처	문화 · 여가 <b>모바일 쿠폰</b>	관광지	• 국립세종수목원 입장료 1천원 할인
			• 청남대 입장료 1천원 할인
			• 서산버드랜드 입장료 1천원 할인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1천원 할인
			• 경주시 사적지 등(10개) 입장료 1천원 할인
			• 경주엑스포대공원 입장료 2천원 할인
			• 경주버드파크 입장료 3~5천원 할인
			• 부산 아홉산숲 입장료 1천원 할인
			• 상호원 입장료 1~2천원 할인
			• 훈데르트바서파크 객실당 입장권 1매 제공
			• 마라도·가파도 정기여객선 왕복 승선료 2천원 할인
• 라온 더마파크 체험료 및 이용료 할인			



	과학관 · 전시관	•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시 관람료 10% 할인
		• 국립생태원 입장료 1천원 할인
		• 국립해양·낙동강·호남권생물자원관 입장료 1천원 할인
		• 세종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관 관람료 1천원 할인
		• 국립중앙과학관 대인 입장료 1천원 할인
		• 예천천문우주센터 입장료 1천원 할인
		• 국립광주과학관 대인 입장료 1천원 할인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료 및 기념품점 구매금액 할인
	기타	• CGV 영화관(193개) 관람료 2천원 할인
		•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 세종 퇴실시간(11시~12시) 연장
		• 라고바움 관광호텔 퇴실시간(11시~14시) 연장
		• 서귀포 JS호텔 숙박요금 5천원 할인
		• 목동아이스링크 입장권 1천원 할인

\* 자세한 할인조건은 손택스·사용처에서 확인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5월 30일(금)	6월 2일(월)	6월 4일(수)
미 달 러 (USD)	1381.40	1375.70	1376.90
일 본 엔 (JPY)	959.27	956.78	956.75
영 국 파 운 드 (GBP)	1864.48	1852.79	1861.98
캐 나 다 달 러 (CAD)	1000.51	1002.33	1003.64
홍 콩 달 러 (HKD)	176.18	175.44	175.51
위 안 화 (CNH)	191.88	191.17	190.90
유 로 화 (EUR)	1571.14	1562.73	1566.29
호 주 달 러 (AUD)	890.24	887.05	889.96
싱 가 폴 달 러 (SGD)	1073.52	1067.30	1067.74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25.49	323.20	324.36

# '24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 금융감독원, 2025. 5

## - 주요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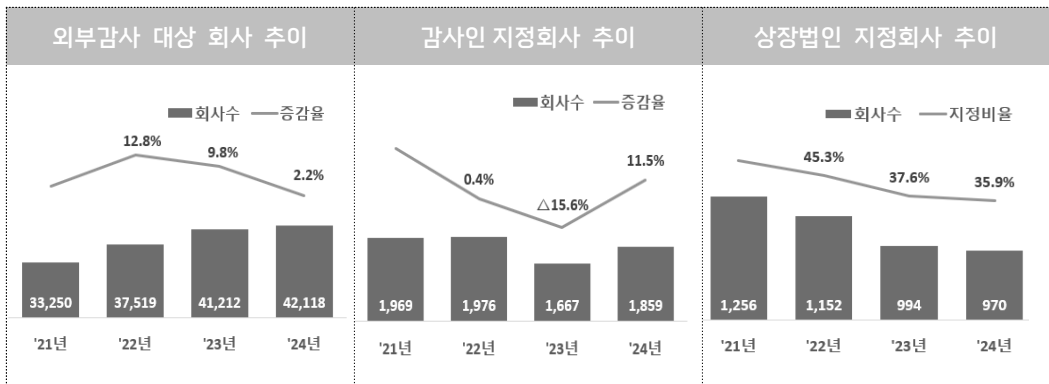
◆ '24년말 현재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42,118사로 전년 (41,212사) 대비 906사 증가 (2.2% ↑)하였습니다.

√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 수는 증가하였으나, 증가율(2.2%)은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6.4%)을 하회하는 등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 '24년 감사인 지정회사 수는 1,859사로 전년 (1,667사) 대비 192사 증가 (11.5% ↑)하였습니다.

√ 직권 지정은 증가(233사, 21.3%↑)하였으나, 주기적 지정은 지정 사유 합리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41사, 7.2%↓)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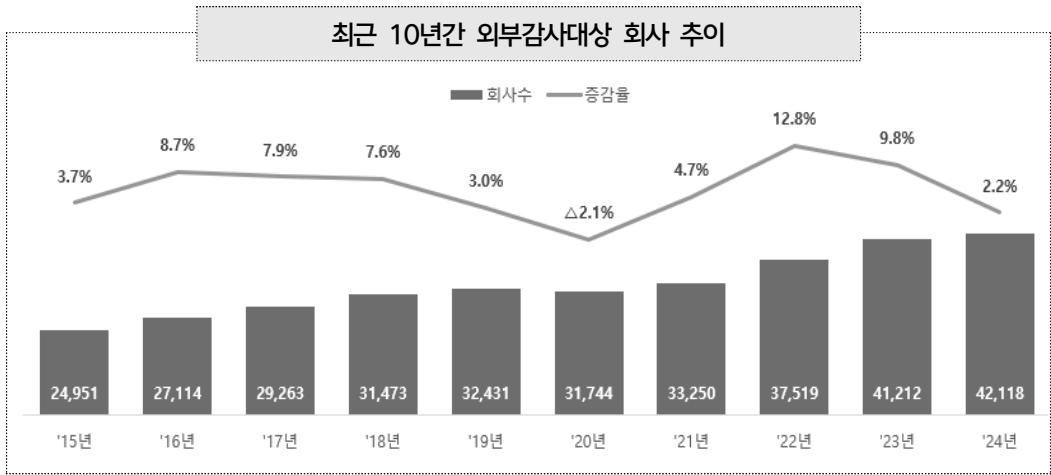
◆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수(970사) 및 지정비율(35.9%)은 3년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 I '24년도 외부감사 대상 회사 현황

## 1 개요

- 전체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23년말 41,212사에서 '24년말 현재 42,118사로 906사 증가(2.2%↑)
  - 新 외감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등으로 '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 (과거) 자산 120억원 ↑ or 자산 70억원 ↑ & 부채 70억원 ↑ or 자산 70억원 ↑ & 종업원 300명 ↑ 등
    - (현행) 자산 500억원 ↑ or 매출액 500억원 ↑ or
    - ①~④ 중 2개 이상 (①자산 120억원 ↑, ②부채 70억원 ↑, ③매출액 100억원 ↑, ④종업원 100명 ↑) 등
  - 다만, '24년 증가율(2.2%)은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6.4%)을 하회하며, 증가세가 둔화



## 2 유형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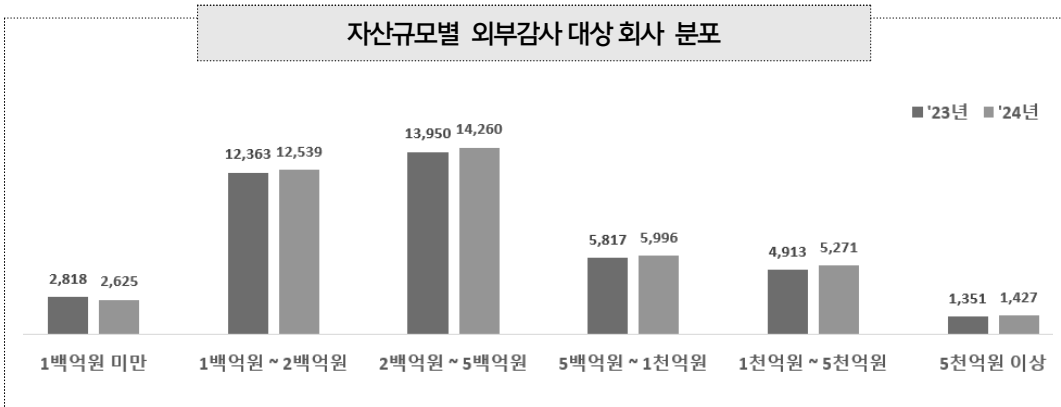
- (회사 유형) 주식회사 중 비상장주식회사가 38,774사로 대부분(92.1%)을 차지하고 주권상장법인인 2,705사(6.4%)이며, 유한회사는 639사(1.5%)임
  - 유형별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전년 대비 모두 고르게 증가\*
    - \* 비상장 주식회사 827사(2.2% ↑), 주권상장법인 63사(2.4% ↑), 유한회사 16사(2.6% ↑)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단위: 사, %)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비상장)	합 계
	주권상장			비상장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23년 (비중)	833 (2.0)	1,680 (4.1)	129 (0.3)	2,642 (6.4)	37,947 (92.1)	40,589 (98.5)	623 (1.5)	41,212 (100.0)
'24년 (비중)	839 (2.0)	1,747 (4.1)	119 (0.3)	2,705 (6.4)	38,774 (92.1)	41,479 (98.5)	639 (1.5)	42,118 (100.0)
증감 (증감률)	6 (0.7)	67 (4.0)	△10 (△7.8)	63 (2.4)	827 (2.2)	890 (2.2)	16 (2.6)	906 (2.2)

② (자산 규모) 2백억원 ~ 5백억원이 14,260사(33.8%), 1백억원 ~ 2백억원이 12,539사(30.0%)로 절반 이상을 차지



③ (결산 월) 12월이 40,962사로 97.2%에 달하며, 3월 534사(1.3%), 6월 283사(0.7%), 9월 137사(0.3%) 등의 順

결산 월별 외부감사대상 회사 분포('24년말)

(단위: 사, %)

구분	결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상 장		1	3	18	2	4	14	-	1	6	-	1	2,655	2,705
비상장		28	36	516	36	25	269	10	12	131	23	20	38,307	39,413
합계		29	39	534	38	29	283	10	13	137	23	21	40,962	42,118
(비중)		(0.1)	(0.1)	(1.3)	(0.1)	(0.1)	(0.7)	(0.0)	(0.0)	(0.3)	(0.1)	(0.0)	(97.2)	(100.0)

### 3 감사인 선임 현황

- 전체 외부감사 대상(42,118사) 중 30,159사(71.6%)는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하였고, 7,152사(17.0%)는 변경\*
  - \* 나머지 4,807사(11.4%)는 초도 감사로 감사인을 신규 선임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변경 선임 비중(37.0%)은 주기적 지정제의 영향으로 비상장사(15.6%)의 두 배를 상회

감사인 선임 및 변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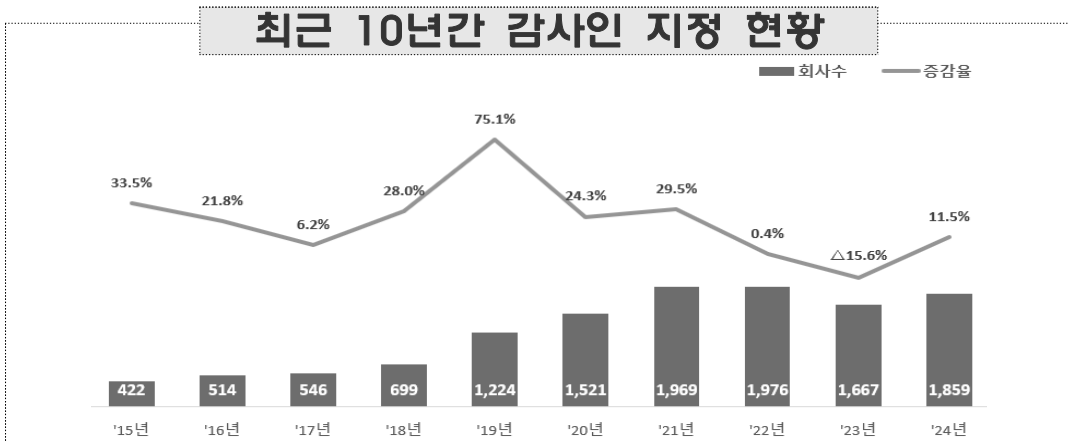
(단위: 사, %)

구분	상장 (비중)	비상장 (비중)	합계 (비중)
계속 선임	1,662 (61.4)	28,497 (72.3)	30,159 (71.6)
변경 선임	1,001 (37.0)	6,151 (15.6)	7,152 (17.0)
신규 선임	42 (1.6)	4,765 (12.1)	4,807 (11.4)
합계	2,705 (100.0)	39,413 (100.0)	42,118 (100.0)

## II '24년도 감사인 지정 현황

### 1 개요

- '24년말 현재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859사로 전년(1,667사) 대비 192사 증가(11.5%↑)
  - 이는 주기적 지정회사가 41사 감소하였으나, 직권 지정회사가 233사 증가한 데에 기인



## 2 지정 비율

- '24년말 현재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 비율은 4.4%로서 전년(4.0%)보다 소폭 상승(0.4%p↑)하였으나, 4% 수준을 유지
  -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수는 970사이며, 지정비율은 35.9%로서 新외감법 시행('18.11월) 이후 '21년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나, 지정제도 개선 효과로 '22년부터 3년 연속 하락

###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개선사항

#### '20년 주요 개선사항

- ☑ (직권 지정) 부채비율 과다 지정사유 폐지(①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 초과, ②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 ③ 이자보상배율 1미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직권지정 대상)

#### '23년 주요 개선사항

- ☑ (주기적 지정)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자산 1천억원 → 5천억원)
- ☑ (직권 지정) ① 재무기준 직권 지정사유가 연속 발생해도 자유선임 기간 보장, ② 재무기준 수치상정 재무제표 변경(연결→별도), ③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폐지

### 외부감사인 지정 비율

(단위: 사, %, %p)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a)	'24년(b)	증감(c=b-a)
전 체	지정회사(A)*	1,224	1,521	1,969	1,976	1,667	1,859	192
	전체 외감(B)	32,431	31,744	33,250	37,519	41,212	42,118	906
	지정비율(C=A/B)	3.8	4.8	5.9	5.3	4.0	4.4	0.4
상 장	지정회사(A)*	807	1,060	1,256	1,152	994	970	△24
	전체 상장사(B)	2,326	2,382	2,457	2,542	2,642	2,705	63
	지정비율(C=A/B)	34.7	44.5	51.1	45.3	37.6	35.9	△1.7

\* 지정시점 기준 예) '24년에 '25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한 경우 '24년 지정회사로 간주하고 계산

## 3 지정 사유별 지정 현황

- ① (주기적 지정) '24년말 현재 주기적 지정회사는 530사로 전년(571사) 대비 41사 감소(7.2%↓)
  - '23년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 상향으로 비상장회사의 감소폭(△24사, 44.4%↓)이 주권상장법인(△17사, 3.3%↓)보다 2년 연속 크게 상회

주기적 지정 현황

(단위: 사)

'23년(a)			'24년(b)			증감(증감률) (c=b-a)		
전체	상장	비상장	전체	상장	비상장	전체	상장	비상장
571	517	54	530	500	30	△41 (△7.2%)	△17 (△3.3%)	△24 (△44.4%)

- '24년 주기적 지정회사 중 연속 지정은 341사(상장 317, 비상장 24)이며, 신규 지정은 189사(상장 183, 비상장 6)

연속·신규 주기적 지정 내역

(단위: 사)

상장(a)			비상장(b)			합계(c=a+b)		
전체	연속	신규	전체	연속	신규	전체	연속	신규
500	317	183	30	24	6	530	341	189

㉔ (직권 지정) '24년 말 현재 직권 지정회사는 1,329사로 전년(1,096사) 대비 233사 증가(21.3%↑)

- 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488사로 가장 많고, 감사인 미선임(298사), 재무기준 미달(184사), 관리종목(155사) 등의 順

사유별 직권 지정 현황\*

(단위: 사, %)

구 분	'23년(a)			'24년(b)			증감(c=b-a)		
	전체	상장	비상장	전체	상장	비상장	전체	상장	비상장
상장예정법인	466	18**	448	488	18**	470	22	-	22
재무기준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169	169	-	184	184	-	15	15	-
관리종목	148	137	11	155	135	20	7	△2	9
감사인 미선임***	88	-	88	298	-	298	210	-	210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60	60	-	54	54	-	△6	△6	-
감리조치	40	21	19	45	25	20	5	4	1
회사요청	46	43	3	43	34	9	△3	△9	6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34	10	24	12	8	4	△22	△2	△20
횡령·배임 발생	19	18	1	11	10	1	△8	△8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10	-	10	8	1	7	△2	1	△3
기타	16	1	15	31	1	30	15	-	15
합 계 (증감률)	1,096	477	619	1,329	470	859	233 (21.3)	△7 (△1.4)	240 (38.8)

- \* 지정 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 지정 사유로 분류
-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코넥스 상장사 등
- \*\*\* 감사인 미선임 회사에 대한 점검 강화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지정회사 수 증가

#### 4 회계법인별 지정 현황

- '24년 감사인 지정대상 1,859사에 대하여 51개 회계법인('23년 53개 회계법인)을 지정
  -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속한 가군은 1,018사(54.8%)로 전년(851사, 51.0%) 대비 167사 증가하였으며, 비중은 3.8%p 증가

##### <회계법인별 지정 현황>

(단위: 사, %, %p)

구 분	'23년		'24년		증감	
	회사수(a)	비중(b)	회사수(c)	비중(d)	회사수 (e=c-a)	비중 (f=d-b)
가군(Big 4)*	851	51.0	1,018	54.8	167	3.8
그 외**	816	49.0	841	45.2	25	△3.8
합 계	1,667	100.0	1,859	100.0	192	-

- \* 종전 감사인 지정 점수 체계가 '가군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외부감사규정을 개정('25.5.20. 시행)하여 지정방식을 합리화하였고, '25.4월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이 운영 중인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T/F」에서 감사인 지정기준 및 방식을 '감사품질' 과 '산업전문성' 중심으로 개편 추진 중에 있음
- \*\* '23년 49개 회계법인, '24년 47개 회계법인

### III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신규 외부감사 대상회사 등이 외부감사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또한, 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을 제고하면서 기업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음

## 참고 외부감사대상 및 감사인 지정사유

### □ 외부감사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다음의 사항 중 2개(유한회사: 3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이 50명 이상(유한회사 限)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 외부감사 면제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외감규정 제2조)

-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 감사인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또는 선임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
  - 해산, 청산 또는 파산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
  -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 연락두절 등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폐업한 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감사인 지정사유(외감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거나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주권상장법인
-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감사인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선위가 인정한 회사
-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감사보수 미지급·미증액, 감사자료 미제출 또는 감사의견 관련 부당압력 등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 외감법상 특정 사항을 위반하여 증선위로부터 경고보다 높은 조치를 받은 회사
-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 요청
- 소속 임직원이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공소제기된 주권상장법인
- 지정기초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회사
- 주기적 지정(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최근 3년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

- 금융감독원, 2025. 5

## < 주요내용 >

- ◆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2~'24년) 총 458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였고, 그 중 214사가 제재조치 되었습니다.(중조치는 증선위·금융위 의결)
  -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기업(22사), 재무적 위험 기업(31사) 및 사회적 물의 기업(12사) 등에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현장감리를 확대함으로써 회계분식을 신속하게 적발하였으며,
  - 그 결과, 52사에 대해 총 7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22사가 검찰고발·통보되는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과징금 부과액: '19년~'21년 356억원(연평균 119억원) → '22년~'24년 772억원(연평균 257억원)

- ◆ 한편, 금융감독원은 회계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감사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연2회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최근 지적사례 14건을 공개\*하였습니다.

\* '22년도 이후 공개를 확대('22년15건→'23년18건→'24년27건)하고, '11년 이후 총 182건 공개

-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IPO 예정기업 등의 매출 부풀리기와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파생상품 회계처리 누락 등 다양한 지적 사례를 포함하고 있어, 회계실무에서 유의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I | 심사·감리 실적

- (개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2년~'24년)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을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 3년간 458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증선위 및 금융위 의결에 따라 52사에 대한 과

징금을 부과하고, 22사를 검찰고발하는 등 총 214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연도별 심사·감리 현황>

(단위: 사,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2~'24년	'19~'21년
심사·감리 합계	160	133	165	458	431
심사*	136	113	130	379	273
감리**	24	20	35	79	158
중조치					
과징금(건수)	17	15	20	52	63
과징금(금액)	260	91	421	772	356
검찰고발·통보	6	7	9	22	26

\* (심사) 공시자료 검토 결과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해 회사 소명을 듣고, 경미한 위반(과실)이 있는 경우 수정권고하여 회사가 수용하면 경조치(금감원장) 종결

\*\* (감리) 수정권고 불수용, 중조치, 제보 등 혐의사항은 감사인까지 위반 여부 검토

- (IPO 기업에 대한 적시 조치)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신청 예정법을 인을 통보받아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오고 있으며, 회계분식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 등의 자본시장 진입 차단을 위해 엄정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3년간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IPO 기업(22사) 중 증선위로부터 중조치 이상을 받은 3개사는 모두 상장 유예되었고, 그밖에 IPO 직후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은 신속히 거래정지되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재무적 위험·사회적 물의에 대한 적발 기능 강화) 한계기업 등 재무적 위험기업(31개사)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 회계부정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12개사)\*을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 \* 빈번한 최대주주 변경, 횡령·배임 발생기업, 무자본 M&A 기업 등
  - 심사·감리가 완료된 36사 중 17사에 대해 조치(지적률 47.2%)가 부과되었으며 이중 7건은 중조치(중조치 비율 41.2%)되는 등 부정적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 II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 금융감독원은 '11년 이후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공개해 왔으며, '24년부터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였습니다.
  - 이번에 공개하는 '24년 하반기 지적사례 14사를 포함하여 총 182사의 사례를 공개하

였습니다.

- '24년 하반기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4사)이었으며, 주식 미기재 2사, 투자주식 과대계상 1사, 금융부채 미인식 등 기타자산·부채 관련 7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단위 : 사)

공개 시기	'25.5월	'24.9월	'24.5월	'23.11월	'22.6월	'21.12월	'21.6월	'20.8월	'19.12월	합계	
조치 시기	'24.하	'24.상	'23년	'22년	'21년	'20년	'18년 ~ '19년	'15년 ~ '17년	'11년 ~ '14년	'11년 ~ '24.하	
지적 유형	① 매출·매출원가	4	2	6	3	4	4	5	12	4	44
	② 투자주식	1	4	-	4	3	4	5	6	4	31
	③ 재고·유형자산	-	2	2	3	3	-	1	5	7	23
	④ 기타자산·부채*	7	4	4	5	2	8	2	5	7	44
	⑤ 주식 미기재 등	2	1	2	3	3	11	2	9	7	40
지적사례 수(합계)	14	13	14	18	15	27	15	37	29	182	

\* (예시)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리스기간 산정 오류, 금융부채 미인식,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오류 등

-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주로 지난 3년간 역량을 집중한 회계 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에 대한 회계위반 적발 및 조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아울러 회계 오류를 예방하고, 기업의 적시성 있는 재무제표 정정을 유도하는 테마심사 등의 심사 사례도 포함하였습니다.

<증권위·금융위 주요 조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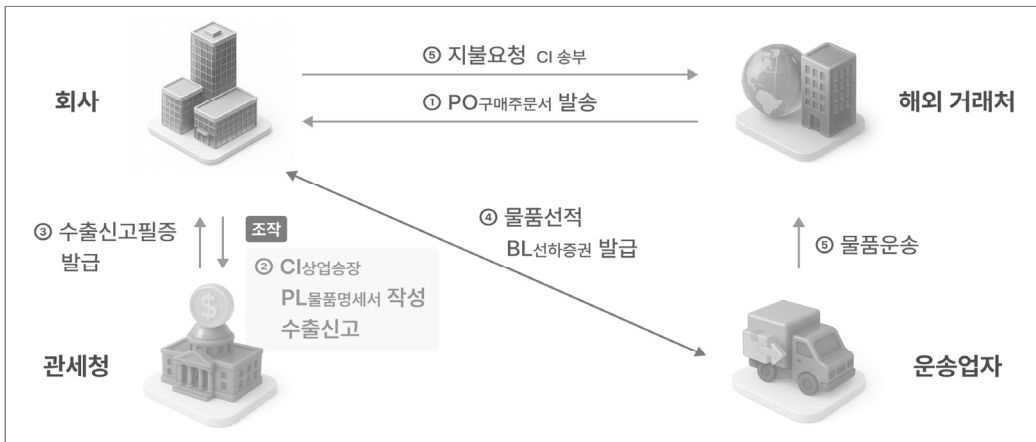
구분	내용
IPO 예정기업	IPO 목적으로 재무성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기업에 대하여 검찰고발·과징금 등 중조치를 부과
현장조사	회사의 허위매출 관련 미판매 재고를 현장에서 신속히 조사함으로써 분식회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
한계기업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영업이익을 허위계상한 한계기업에 대하여 거래소에서 거래정지할 수 있도록 함
과징금	중대한 회계 위반에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161억원)을 부과
테마심사	매년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선정·발표하여 오류를 예방하고, 오류 항목은 신속 점검으로 회계정정을 유도

### III 주요 지적사항 및 유의사항 \*증권위·금융위 주요 조치 사례

#### 사례1 IPO 예정 기업의 회계분식에 대한 중조치

◆ IPO를 목적으로 가공매출을 인식한 기업에 대하여 회사·대표이사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중조치하였습니다.(고의위반)

- (사실관계) 화학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릴 유인이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회사는 상업송장(CI) 및 물품명세서(PL)에 실제보다 많은 수량과 높은 단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공매출을 인식하거나,
    - 검수 또는 선적이 완료되지 않아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계상하였음
  - 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해외 매출채권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해외거래처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감사를 방해한 행위도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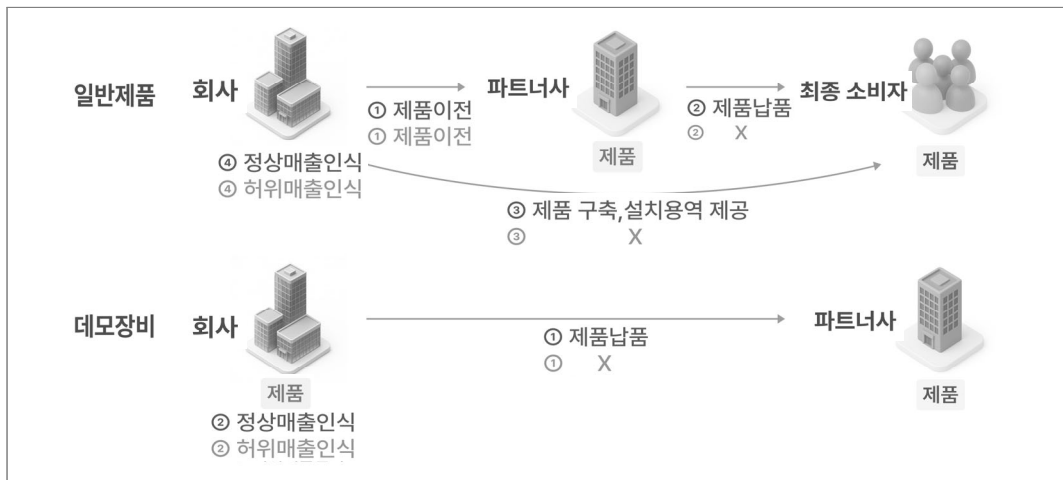
- (지적내용) 회사는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자료의 조작으로 가공의 외관을 형성하여 매출을 계상하였고, 감사인에게 매출 및 매출거래처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외부감사를 방해하였음
- (유의사항) 감사인은 IPO 과정에서 제시되는 실적 등의 분식 가능성에 유의하고, 회사가 외부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경우 부정위험 등을 감안하여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감사 의견에도 반영 고려
  - 한편, 회사는 외부감사 방해행위가 “위법동기 고의 판단”의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되

고,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도 가능한 점에 유의

## 사례2 현장조사를 통한 신속한 감리실시

◆ IPO 공모가를 높이기 위한 조직적 분식회계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인하였습니다.(고의위반)

- (사실관계) 보안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B사와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등은 IPO 공모가를 높이기 위하여 매출액을 부풀릴 유인이 존재하였음
  - 회사는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거나(일반제품\*), 상품납품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데모장비\*\*)로 인식하였음
    - \* 일반제품 매출: 파트너사에게 제품을 미리 이전하고 이후 최종소비자에게 납품·구축
    - \*\* 데모장비 매출: 파트너사가 제품의 이해 및 영업활동을 위해 회사로부터 엄가에 구입
  - 또한, 회사는 외부감사인의 재고실사시, 납품 없이 매출로 인식하였던 재고자산을 별도 장소에 은닉하기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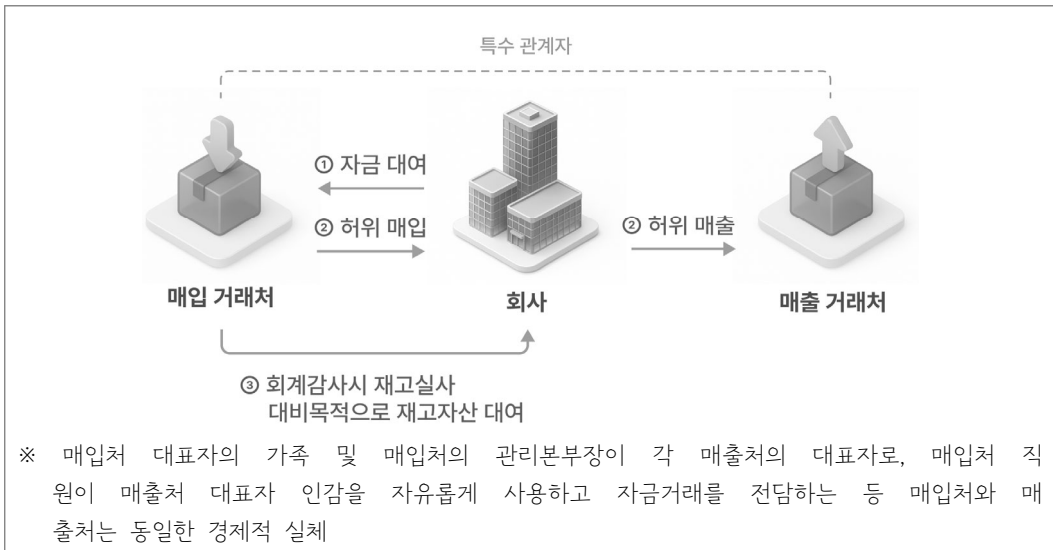
- (지적내용) 금감원은 현장조사로 별도 장소에 보관된 재고자산을 적발하였고, 허위매출 인식에 따른 당기순손실 과소계상 등을 지적
- (유의사항) 공모가 산정을 앞둔 기업의 경우 실적 부풀리기 유인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는 실적 추이 등을 확인할 필요
  - 감사인은 IPO 등으로 매출 과대계상 유인이 있는 경우 거래증빙 등 매출 관련 감사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 한편, 회사가 허위증빙 등을 마련해 놓더라도 금감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조치가 가중됨

### 사례3 한계기업의 조기퇴출 유도

◆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한계기업에 대하여 거래소 통보를 통해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였습니다.(고의위반)**

-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C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고자, 실제 상품 인도 없이 자금만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였음
  - 매출처와 매입처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이고, 상품 이동도 없어 회계기준 상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또한, 회사는 허위 재고자산 계상 사실을 은폐하고자 재고실사일에 재고자산을 대여받아 창고에 보관하다가 실사 후 매입처로 반환



- (지적내용) 회사는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 유출입만 발생시켜 거래의 실질은 자금 대여거래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관을 형성하여 허위매출 등을 인식하였고,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유의사항) 투자자는 연속 영업손실 등에 직면한 기업에 관리종목 지정 등의 회피를 위한 회계분식의 유인이 있음을 염두하고,

- 회계기준 위반으로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통보되어 거래소의 거래정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
- 감사인은 한계기업이 새로운 상품 매출거래를 인식하는 경우, 거래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확보를 통해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

#### 사례4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엄정 조치

◆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하여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161억원)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설비 제작 사업 등을 영위하는 D사는 건설공사 관련하여 공사에정원가 및 공사손실을 과소계상하였고,
  - 해외 종속기업이 자본잠식 등으로 투자주식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음
  - 감사인은 해당 종속기업을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으로 판단하여, 계정별 잔액의 증감만 계산하고 중요한 감사절차를 생략하였음
  
- (지적내용) 회사는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을 통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종속회사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 \*    공사수익은    총공사수익에    진행률(=투입공사원가÷총공사원가)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총공사원가를 과소산정하는 경우 진행률이 높아져 공사수익이 과대계상됨
  - 감사인은 해외 종속회사의 공사수익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위반 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위반 관련 과징금 회사 161억원(역대 최대), 감사인 14억원 부과
  
- (유의사항) 장기 공사수익의 경우 합리적 원가 추정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사례가 있으므로 예정원가 산정 시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산정해야 함
  - 감사인은 해외종속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보증 여부 등 회사와의 관계 및 영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해외종속기업에 대한 내부통제를 고려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여야 함
  - 회사에 중대한 회계부정이 발생한 경우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 중대한 회계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사례) >

구분	지적사항	과징금
회사	· 매출 과대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	√ 회사: 161억원 √ 전 대표이사: 10억원
	·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 과소계상	
	· 자료제출 거부 등	
감사인	· 매출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관련 감사절차 소홀	√ OO회계법인: 14억원
	· 종속회사투자주식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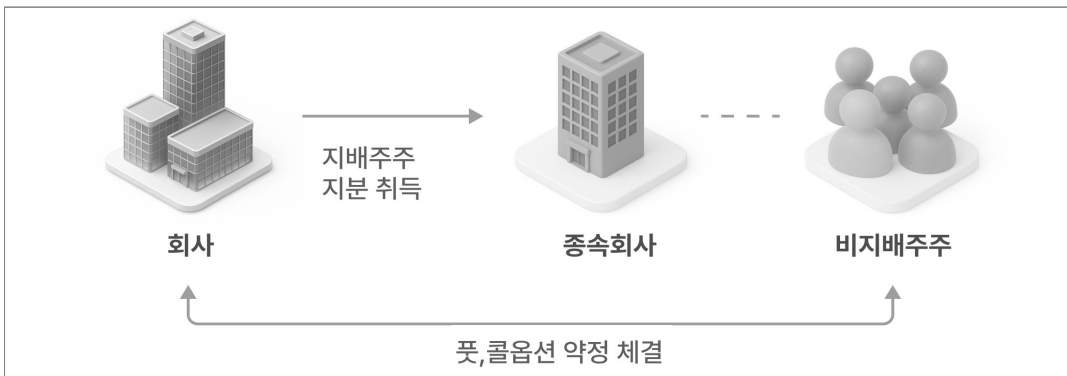
**사례5 회계 위반 예방을 위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운영**

◆ 회계 위반 예방을 위한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하고, 경미한 위반은 수정공시 권고 이행시 금감원장 경조치로 심사 종결하였습니다.

※ 동 사례는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22.6.27. 보도)」에 따라 '사업결합' 관련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음

□ (사실관계) 응용소프트웨어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E사는 사업확장을 위해 F사(이하 '종속회사') 지분을 취득하면서 비지배주주와 풋·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금융부채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않음

\* 콜옵션: 요건 충족시 회사가 비지배주주에게 종속회사 주식을 매도 요구 가능  
풋옵션: 요건 충족시 비지배주주가 회사에 종속회사 주식을 매수 요구 가능



□ (지적내용) 재무제표에 풋·콜옵션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금융부채 및 금융부채평

### 가손실 과소계상

- (유의사항) 사업결합시 비지배지분 관련 옵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 내용, 성격, 관련 의무 등을 평가하여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금융부채 등으로 적절히 회계처리하여야 함
  - 특히, 옵션 행사 유예 등의 구두 합의 사항이 있더라도 회사가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를 인식할 필요
  - 회사 및 감사인은 향후 유사 회계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

→ 심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수정공시를 권고하여 회사는 이행하였고, 과실로 인한 비 반복적 위반사항으로 판단되어 경조치(주의·경고) 부과

## IV 감리절차 개선

◆ 회계위반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절차는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22.5.31., 금융당국)」에 따라 한층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습니다.

### 1 감리기간 단축

◆ 감리 조사기한1년을 명문화하여 운영하였고, 그 결과 모든 감리건의 내부조사를 1년 이내에 완료하여 수검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규정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22.9.29.)하여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
  -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
  - (이행결과) 규정화된 감리기간 통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감리 조사기간 1년 초과건이 발생하지 않는 등 감리 장기화 개선

### 2 조치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 감리결과 조치대상자에게 조치의 구체적 사유를 상세히 통지함으로써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치 수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절차개선) 감리 결과 예상 조치 통지(조치사전통지서) 시, 조치의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감리집행기관의 판단, 적용된 양형기준(가중감경 사유 포함) 등을 알 수 있도록 통지서 개선
  - (이행결과) 개선된 양식에 따라 위반 근거, 지적금액 및 과징금 산정내역, 조치수준 등을 상세히 통지하고, 조치대상자는 감리위·증선위에서 해당 통지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

### 3 피조치자 문답서 열람시기 개선 및 복사 허용 등

◆ 피조치자가 종전보다 앞당겨진 시점에 문답서를 열람하고, 복사를 할 수 있음에 따라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 (규정개정) 금융위의 외감규정 등 개정('22.9.29.)에 따라 피조치자의 문답서 열람 시기를 2주 이상 앞당기고, 복사를 허용
  - (이행결과) 문답서 열람·복사 절차를 마련하여 피조치자가 조기에 문답서를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방어권 행사를 적극 지원
- (기타 권익보호 등) 문답서 및 감리절차 안내문 개정, 대리인 조사과정 기록 허용 및 자료요청의 서면화 등 절차개선으로 피조치자의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제고

## V 향후계획

-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여 지속적으로 Database를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1 2024년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목록

#### ① 매출·매출원가(4건)

1. FSS/2505-01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2. FSS/2505-02 매출 허위계상

3. FSS/2505-03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4. FSS/2505-04 매출 기간귀속 오류

**②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1건)**

1. FSS/2505-05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③ 기타 자산·부채(7건)**

1. FSS/2505-06 가장납입 및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2. FSS/2505-07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3. FSS/2505-08 리스기간 산정 오류
4. FSS/2505-09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계상
5. FSS/2505-10 금융부채 미인식 오류
6. FSS/2505-11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오류
7. FSS/2505-12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등

**④ 주식미기재 등(2건)**

1. FSS/2505-13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2. FSS/2505-14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담보제공사실 주식 미기재